

서울고등법원 2024. 12. 5 선고 2023나2060194 판결 [매매대금 등 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2. 5 선고 2023나206019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11. 9 선고 2023가단2103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성건

피고, 항소인B

변론 종결 2024. 11. 7.

판결 선고 2024. 12. 5.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 11. 9. 선고 2023가단21034 판결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21,272,210원 및 그중 209,964,3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1)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판결문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면 제5행의 '받았다'를 '받았다.'로 고친다.

○ 제3면 제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3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91,800,000원을
초과하여 391,8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97,400,000원을 초과하는 돈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3면 제18행의 '가산세를 납부할'을 '가산세 등의 상당액을 지급할'로 고친다.

○ 제4면 제1행과 제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는 상속받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매매대금을 합계 3억원으로 정하였는데,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중간생략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합계 928,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작성하게 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와 관련하여 2021. 12.경 남양주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고지를 받았고, 2022. 1.경 가평군청으로부터 지방세 납부고지를 받았는데, 피고가 지방세를 원고 대신 납부하였고,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원고 대신 납부한 점, ③ 원고 내지 원고의 처 H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세금납부의 이행을 요청하고, 이에 피고가 세금을 내겠다거나 준비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도와 관련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의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남양우

판사홍성욱

판사채동수

1) 원고의 2023. 10.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송달일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